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5일 07시 19분

목차

목차 2
일반/휴게음식점 신규신고 3
일반음식점 영업신고 3
휴게음식점 영업신고 4

일반음식점 영업신고

영업의정의	음식류를 조리 ·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건물용도	제2종 근린생활시설
처리기간	즉시
검토사항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하수도법」, 「농지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소음 · 진동규제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지방세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
구비서류	▪ 교육이수증 1부 ▪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 1부 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·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 ▪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▪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) ▪ 건강진단결과서 1부
수수료	28,000원
관련서식	식품 영업신고서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) hwp 다운로드
시설기준	여수시청 >분야별정보>의료/식품/위생 >식품/위생 >시설기준 안내 참조
영업신고 등의 제한	식품위생법 제38조(영업허가 등의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 (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)
처리절차	신고서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교부 →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
관련법규	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
문의처	식품위생과 061-659-4223

제	

휴게음식점 영업신고

영업의 정의	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(주로 다류.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·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,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· 판매하는 영업)
건물 용도	제1종 근린생활시설
처리 기간	즉시
검토 사항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하수도법」, 「농지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소음 · 진동규제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지방세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
구비 서류	· 교육이수증 1부 · 건강진단결과서 1부 ·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) ·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·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)
수수료	28,000원
관련 서식	식품 영업신고서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) hwp 다운로드
시설 기준	여수시청 >분야별정보 >의료/식품/위생 >식품/위생 >시설기준 안내 참조
영업 신고 등의 제한	식품위생법 제38조(영업허가 등의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 (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)
처리 절차	신고서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교부 →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
관련 법규	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
문의 처	식품위생과 061-659-4223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(http://www.yeosu.go.kr)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